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초·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신설('22.12.27.)에 따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, 동 조항은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'법령과 학칙'에 유보하고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

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을 명시하여 초·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학생생활지도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

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, 현장 책임 의식에 기반한 학생생활 지도를 독려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제1항의 '학습부진 아 등'이라는 표현 대신 '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'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

또한 법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,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·운영, 제10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범위 등을 대

통령령으로 정하여 ‘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

(제31조제8항 개정)

- 1)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한 초·중등교육법 개정('22.12.27.) 취지를 반영하여,
- 2) 학생생활지도의 근거 규정을 기존의 ‘법 제18조제1항’에서 ‘법 제20조의2’로 수정하고, 법령상 중복 규율될 수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

나.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

(안 제40조의4제1항 신설)

- 1) 초·중등교육법,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에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
- 2) 명확한 정의 규정이 부재하여 해석·적용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바, 학생생활지도의 분야 및 방법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

다.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한 세부사항 규정 근거 신설

(안 제40조의4제2항 신설)

- 1)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
- 2) 학생생활지도를 규정하는 방침체계가 현장 수용성있게 연차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

라. 학교별 학칙을 통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 마련 신설

(안 제40조의4제3항 신설)

- 1) 교육부장관 고시 또는 공고를 통해 안내된 범위 내에서, 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
- 2) 학교별 특수성이 반영되고, 현장 책임의식에 기반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마. 제54조의 제목 및 이하 항과 제105조제1항제1호의 ‘학습부진아 등’을 ‘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’으로 변경함

현행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가 “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)”으로 개정(2022. 12. 27.) 및 시행(2023. 6. 28.)될 예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105조와의 용어 통일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정함

바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관한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등

(안 제54조의2 신설)

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, 이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용할 수 있는데, 이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, 방법, 절차, 보존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제54조의2를 신설함

사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

(안 제54조의3 신설)

법 제28조 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체계상 조문의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의 법 시행령 제54조 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54조의3 제1항 및 제2항으로 신설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5.25. ~ 6.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8항 중 “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”을 “장 및 교원은 법 제20조의2”로, “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”를 “도구”로 한다.

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4(학생생활지도)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, 진로, 보건·안전, 인격 형성,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, 상담(학부모 상담 포함), 주의, 훈육·훈계, 지시, 과제 부여 등의 조치(이하 “학생생활지도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, 범위,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제2항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4조의 제목 “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”을 “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학습부진아 등(이하 “학습부진아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

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
중 “학습부진아동”을 각각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한다.

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2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
용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
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(이하 이 항에
서 “데이터베이스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
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의 성명, 생년월일, 학년(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
학업 중단 시 학년을 말한다), 성별, 주소 및 연락처
2. 학생의 소속 학교(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
시 학교를 말한다) 및 관할 교육청.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
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정보를
포함한다.
3.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을 파악
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
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
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

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: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

2.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: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
제54조의3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) ①

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
1. 연수의 목적 및 내용

2.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

3. 연수의 종류

4.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

5. 연수의 이수기준

6.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2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·진단·지도·예방 및 지원 방법에
관한 사항

3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104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만 19세”를 각각 “19세”로 한다.

제105조제1항제1호 중 “학습부진아동”을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① ~ ⑦ (생 략) ⑧ 학교의 <u>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 육·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, 도구,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 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/u> <u><신 설></u>	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<u>장 및 교원은 법 제20 조의2----- 도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u> <u>제40조의4(학생생활지도)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, 진로, 보건·안전, 인격 형성,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, 상담(학부모 상담 포함), 주의, 훈육·훈계, 지시, 과제 부여 등의 조치(이하 “학생생활지도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 의 유형, 범위,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.</u> <u>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제2항에 따 라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</u>

제54조(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(이하 “학습부진아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.

②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④ (생략)

⑤ ⑥ 삭제

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

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54조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) ①----- 학생들(이하 “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”이라 한다)-----.

②-----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-----.

③ -----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연수의 목적 및 내용

2.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

3. 연수의 종류

4.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

5. 연수의 이수기준

6.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

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
2. 학습부진아등의 판별·진단·지도·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

3.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<삭 제>

제54조의2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·운영)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

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(이하 이 항에서 “데이터베이스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생의 성명, 생년월일, 학년(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시 학년을 말한다), 성별, 주소 및 연락처

2. 학생의 소속 학교(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시 학교를 말한다) 및 관할 교육청. 이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 정보를 포함한다.

3.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

4.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

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.

<신 설>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: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

2.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: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

제54조의3(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) ①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

제104조의4(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) ① 법 제60조의5제2	<u>행해야 한다.</u> <u>1. 연수의 목적 및 내용</u> <u>2.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</u> <u>3. 연수의 종류</u> <u>4.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</u> <u>5. 연수의 이수기준</u> <u>6.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</u>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u>1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u> <u>2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판별·진단·지도·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</u> <u>3.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</u> 제104조의4(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) ① -----
---	--

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1.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(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아닌 경우: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·나. (생 략)

2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105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·공립·사립의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(이하 “자율학교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국립학교를

-----.

1. -----19세

----- 19세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05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-----

-----.

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 1. <u>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</u> 2. ~ 7. (생 략) ② ~ ⑥ (생 략)	----- ----- -----. 1. <u>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</u>----- 2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	
교육복지정책과/기초학력진로교육과/학교생활문화과	
연 락 처	(044)
	203 - 6531/6747/6960